

# UCP 해설

유 하상

# 제 4 주

UCP 제13조-20조

유 하상

# 제13조 은행 간 상환약정

## 제13조

### ■ 제13조 은행 간 상환약정

#### 제 13조 은행간 상환약정

- a. 신용장에서 지정은행(“청구은행”)이 상환을 다른 당사자(“상환은행”)에게 청구하여 받는 것으로 명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신용장은 상환이 신용장의 발행일에 유효한 은행간 대금상환에 관한 ICC 규칙에 따르는지를 명기하여야 한다.
- b. 신용장에서 상환이 은행간 대금상환에 관한 ICC 규칙에 따른다고 명기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 된다:
  - i. 발행은행은 신용장에 명기된 유효성을 따르는 상환수권을 상환은행에 부여하여야 한다. 상환수권은 유효기일에 지배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 ii. 청구은행은 상환은행에게 신용장의 제조건과의 일치증명서를 제공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 iii. 상환이 최초의 청구시에 신용장의 제조건에 따라 상환은행에 의하여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발행은행은 부담된 모든 경비와 함께 이자손실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iv. 상환은행의 비용은 발행은행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비용이 수익자의 부담으로 되는 경우에는, 발행은행은 신용장은 및 상환수권서에 이를 지시할 책임이 있다. 상환은행의 비용이 수익자의 부담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상환이 행해질 때 청구은행에 기인하는 금액으로부터 공제되어야 한다. 상환이 행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은행의 비용은 발행은행의 의무로 남는다.
- c. 발행은행은 상환이 최초의 청구시에 상환은행에 의하여 행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환을 이행해야 할 자신의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 제13조 은행 간 상환약정

제13조

## ■ 제13조 은행 간 상환약정

### <상환의 개념>

상환이란 개설은행이 매입은행 등에게 수입대전을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한다. 모든 신용장에는 개설은행이 매입은행, 지급은행 또는 인수은행 등에게 그들의 매입대전 또는 지급을 어떠한 방법으로 갚아 줄 것인가에 대한 문언이 있는데 이를 상환 방법이라 한다. 신용장의 결제통화가 수출입 양국 통화가 아니고 제3국 통화인 경우나 발행은행의 자금 운영 측면에서 제3국에 소재하는 은행 중 발행은행의 예치환 거래은행을 이용하여 신용장 조건에 따라 대금을 결제하게 되는데 이 은행을 결제은행이라 하고,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을 매입한 매입은행과도 환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매입은행에 어음대금을 상환하여 주는 은행이라하여 상환은행이라고도 한다. 보통 발행은행에 대한 결제은행이 매입은행에 대해서는 상환은행이 된다.

결제은행이란 신용장의 결제통화가 수입국이나 수출국의 통화가 아닌 제3국의 통화일 때에는 개설은행의 거래은행이 개설은행의 지시에 따라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은행을 결제은행이라 한다. 어음을 매입한 ds행에 대금을 상환해 주는 은행이라 하여 상환은행이라고도 한다.

# 제13조 은행 간 상환약정

## 제13조

### ■ 제13조해설

- ① ICC의 은행간 대금상환규칙(URR)은 UCP 500 이후에 시행되어 기존 UCP 500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UCP 600에서는 개설은행에게 신용장 발행시 URR(현재 URR 525)을 적용하고 있음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에 신용장에 URR 적용에 대한 문구가 없다면 b 항과 c 항이 적용되며, 동 조항들은 의미상 UCP 500의 19조에 해당된다.
- ② a 항에서는 개설은행이 어느 특정한 시점에 상환은행에게 상환지시를 꼭 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다. 현재 상당수 은행이 신용장 발행시점에서 상환지시를 내리지 않고, 그 이후에 지시를 하고 있으며, 특히 연지급 형식의 신용장은 신용장 발행 시점보다 인수시점에서 상환지시를 하는 것이 더욱 일반적이다. URR 취지에 의거 상환수권에 유효기일은 언급되지 않아야 한다. 상환보증이 발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항은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
- ③ b 항 1)에서는 신용장에 명시된 이용가능성에 일치하는 상환수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즉 자유매입신용장은 어떤 은행도 상환청구가 가능하며, 제한신용장이면 신용장 조건에 따른 상환청구가 요구된다. 또한 개설은행이 상환은행에 상환권한을 주면서 유효기한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신용장 유효기한 혹은 어느 기간까지 상환청구가 없으면 상환을 허용하지 않는 조건을 두어 상환은행에 통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무시된다. 개설은행은 상환은행에 상환권한을 주면서 신용장 유효기간까지 관리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상 상환은행이 이러한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

# 제14조 서류의 심사기준

## 제14조

### ■ 제14조 서류의 심사기준

#### 제 14조 서류심사의 기준

- a.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및 발행은행은 서류가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를 구성하는지 여부(“일치성”)를 결정하기 위하여 서류만을 기초로 하여 그 제시를 심사하여야 한다.
- b.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및 발행은행은 제시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시일의 다음날부터 최대 제5은행영업일을 각각 가진다. 이 기간은 제시를 위한 모든 유효기일 또는 최종일의 제시일에 또는 그 이후의 사건에 의하여 단축되거나 또는 별도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c.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송서류의 원본을 포함하는 제시는 이 규칙에 기술된 대로 선적일 이후 21일보다 늦지 않게 수익자에 의하여 또는 대리하여 이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신용장의 유효기일보다 늦지 않아야 한다.
- d. 서류상의 자료는 신용장, 그 서류자체 및 국제표준은행관행의 관점에서 검투하는 경우, 그 서류, 기타 모든 명시된 서류 또는 신용장상의 자료와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이와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
- e.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에 있어서, 물품, 용역 또는 이행의 명세는 명기된 경우 신용장상의 이들 명세와 상충되지 아니하는 일반용어로 기재될 수 있다.

# 제14조 서류의 심사기준

## 제14조

### ■ 제14조 서류의 심사기준

- f. 신용장에서 서류가 누구에 의하여 발행되는 것인가를 또는 서류의 자료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운송서류, 보험서류 또는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내용이 요구된 서류의 기능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고 기타의 방법으로 제14조 d항과 일치한다면, 은행은 그 서류를 제시된 대로 수리한다.
- g. 제시되었지만 신용장에 의하여 요구되지 않은 서류는 무시되고 제시인에게 반송될 수 있다.
- h. 신용장이 어떤 조건(condition)과 의 일치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서류를 명시하지 않고 그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은행은 그러한 조건을 명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를 무시하여야 한다.
- i. 서류는 신용장의 일자보다 이전의 일자가 기재될 수 있으나 그 서류의 제시일보다 늦은 일자가 기재되어서는 아니 된다.
- j. 수익자 j. 및 발행의뢰인의 주소가 모든 명시된 서류상에 보이는 경우에는, 이들 주소는 신용장 또는 기타 모든 명시된 서류에 명기된 것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신용장에 언급된 각각의 주소와 동일한 국가 내에 있어야 한다. 수익자 및 발행의뢰인의 주소의 일부로서 명기된 연락처명세(모사전송, 전화, 전자우편 등)는 무시된다. 그러나 발행의뢰인의 모든 주소 및 연락처 명세가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운송서류상의 수화인 또는 착화통지처 명세의 일부로서 보이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소 및 연락처명세는 신용장에 명기된 대로 이어야 한다.
- k. 모든 서류상에 표시된 물품의 송화인 또는 탁송인은 신용장의 수익자일 필요는 없다.

# 제14조 서류의 심사기준

제14조

## ■ 제14조 서류의 심사기준

1. 운송서류가 이 규칙의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또는 제2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그 운송서류는 운송인, 선주 또는 용선자 이외의 모든 당사자에 의하여 발행될 수 있다

# 제14조 서류의 심사기준

## 제14조

### ■ 제14조 해설

- ① 14조를 제외하고 모두 삭제됨. 14조 문구도 ‘on the basis of the documents alone, whether or not they appear on their face ~)’ 정도임. ‘문면상(on their(or its) face)’에 대한 개념이 일부 혼동을 가져오기도 하였고, 은행이 서류 심사시 ‘on their face’ 기준에 의할 때 서류에 대한 지극히 추상적인 심사를 하는데 대한 우려도 있었음. 그러나, 이로 인해 은행이 어느 정도 실질 관계에 대해 심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송장, 물품명세와 L/C상 물품 명세의 엄밀 일치

- \* 기타서류는 상호 모순되지 않는 일반용어로 기술될 수 있음
- 상업송장상의 추가기재사항 - L/C조건과 배치되지 않으면 수리가능하나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표기를 억제

### 일치성 기준 명확화

수익자가 제시한 선적서류의 내용이 이른바 Mirror Image Rule과 같이 모든 선적서류가 똑 같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시된 선적서류 상호간에 서로 모순되지만 않으면 신용장에 일치한 서류를 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제 14조 d항은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ISBP 24항과 62항, 대부분의 국가의 국제분쟁관련 소송의 판례 및 중국 최고인민 법원 신용장 분쟁을 반영한 규정이다.

# 제14조 서류의 심사기준

## 제14조

### ■ 제14조 해설

#### 서류와 무관한 조건의 무시

신용장의 조건은 추상성에 따라 오직 서류만을 근거로 지급을 검토하는 것이므로, 서류와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는 조건은 무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즉, 모든 신용장의 조건은 오직 서류로만 언급명시를 하여야 하며, 특히 실무적으로는 서류의 발행자를 명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은행은 물론 서류와 무관한 조건이 신용장에 명시된 경우에도 이를 무시한다.

#### 수화인과 착화통지처상의 개설의뢰인의 주소

운송 서류상에 기재된 수화인(consignee)과 착화통지처(notify party)의 개설의뢰인의 주소는 신용장의 것과 일치해야 하지만, 신용장이 아닌 기타의 경우에는, 주소가 동일 국가 내의 것이면 신용장의 주소와 반드시 일치해야 할 필요는 없다. 수익자와 개설의뢰인의 연락처와 관련된 사항(전화번호, 텔렉스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은 무시한다.(UCP 600 제 14조)

#### 제3자 서류의 인정 범위 확대

UCP500에서는, 운송증권 상의 송화인과 수익자의 이름이 다른, 이른바 제 3자 발행선화증권에서만 허용하던 것을, 송화인명이 기재되는 모든 선적서류상의 송화인과 수익자가 다른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그 인정 범위를 확대하였다.

# 제15조 적격제시

제15조

## ■ 제15조 적격제시

제 15조 일치하는 제시

- a. 발행은행이 제시가 일치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은행은 지급 이행하여야 한다.
- b. 확인은행이 제시가 일치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행은 지급이행 또는 매입하고 발행은행에게 서류를 발송하여야 한다.
- c. 지정은행이 제시가 일치한다고 결정하고 지급이행 또는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은행은 확인은행 또는 발행은행에게 서류를 발송하여야 한다.

## ■ 제15조 해설

## 제16조 하자서류, 용인 및 통보

제16조

### ■ 제16조 하자서류, 용인 및 통보

제 16조 불일치서류, 권리포기 및 통지

- a.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또는 발행은행은 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이행 또는 매입을 거절할 수 있다.
- b. 발행은행은 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독자적인 판단으로 발행의뢰인과 불일치에 관한 권리포기의 여부를 교섭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제14조 b항에서 언급된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 c.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또는 발행은행은 지급이행 또는 매입을 거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시인에게 그러한 취지를 1회만 통지하여야 한다.

그 통지는 다음을 명기하여야 한다:

- i. 은행이 지급이행 또는 매입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 ii. 은행이 지급이행 또는 매입을 거절하게 되는 각각의 불일치사항; 그리고
- iii. a) 은행이 제시인으로부터 추가지시를 받을 때까지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 또는
  - b) 발행은행이 발행의뢰인으로부터 권리포기를 수령하고 서류를 수리하기로 합의할 때까지, 또는 권리포기를 승낙하기로 합의하기 전에 제시인으로부터 추가지시를 수령할 때까지 발행은행이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 또는
  - c) 은행이 서류를 반송하고 있다는 것; 또는
  - d) 은행이 제시인으로부터 이전에 수령한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것.

## 제16조 하자서류, 용인 및 통보

제16조

### ■ 제16조 하자서류, 용인 및 통보

- d. 제 16조 c항에서 요구된 통지는 전기통신(telecommunication)으로 또는 그 이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기타 신속한 수단으로 제시일의 다음 제5은행영업일의 마감시간까지 행해져야 한다.
- e.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또는 발행은행은, 제16조 c항 iii호 (a) 또는 (b)에 의하여 요구된 통지를 행한 후에, 언제든지 제시인에게 서류를 반송할 수 있다.
- f. 발행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이 조의 규정에 따라 행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은행은 서류가 일치하는 제시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 g. 발행은행이 지급이행을 거절하거나 또는 확인은행이 지급이행 또는 매입을 거절하고 이 조에 따라 그러한 취지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은행은 이미 행해진 상환금에 이자를 추가하여 그 상환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제16조 하자서류, 용인 및 통보

제16조

### ■ 제16조 해설

#### 선적서류 심사기간의 단축

개설은행과 지정은행의 서류 심사 최대 기간이 서류 접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종전의 7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단축되었다. 특히 화환신용장의 선적서류검토기간도 단축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무화환신용장인 Standby L/C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심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불과 수 시간 이면 검토가 충분한 것이 현실임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reasonable time'이란 용어를 UCP에서 삭제하였다. 또한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은 서류검토를 위해 5영업일이 주어지지만(UCP 600 제14조) 개정 UCP600의 제15조에서는,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이 제시가 일치한다고 결정하였을 때는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UCP 600 14조 b 항에서 은행에 허용된 서류심사기간의 기준으로 UCP 500에 명시되었던 “상당기간”이 삭제되었다. 이것이 삭제된 것은 이 기간이 얼마인지 확실하지 않아 소송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은행에 허용된 서류심사 최장기간으로 5영업일, 6영업일, 7영업일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한 결과 6영업일에 9개국, 7영업일에 10개국이 찬성한데 비해 5영업일에 15개국이 찬성하여 다수결로 5영업일로 결정되었다.

서류심사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는 DOCDEX Decision No. 215의 결정이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개설은행이 서류접수 후 4영업일에 대금지급거절을 통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당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인정되어 서류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 제16조 하자서류, 용인 및 통보

### 제16조

#### ■ 제16조 해설

지급하게 되었다. 그런데 은행실무자는 서류심사기간으로 7영업일이 항상 허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은행 실무자의 과실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저된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초안그룹의 위원장이고 은행위원회의 technical adviser인 Garry Collyer는 지정은행과 개설은행 및 확인은행에 항상 5영업일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UCP 600 제15조에서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제시가 일치한다고 결정하였을 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은 유효기일이나 서류제시기간이 임박하였다고 하여 서류를 통상적인 경우보다 더 신속하게 심사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ISP 98의 5.01 a 항(iv)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Banco General Runinahui SA vs Citibank 사건\*1996 미국)에서도 개설은행 및 확인은행은 서류제시기일 또는 유효기일이 임박하였다고 하여 서류심사를 더 신속하게 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 제17조 원본서류와 부분

제17조

### ■ 제17조 원본서류와 부분

제 17조 원본서류 및 사본

- a. 적어도 신용장에 명시된 각 서류의 1통의 원본은 제시되어야 한다.
- b. 서류 그 자체가 원본이 아니라고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명백히 서류발행인의 원본 서명, 표기, 스탬프, 또는 부전을 기재하고 있는 서류를 원본으로서 취급한다.
- c. 서류가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서류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은행은 서류를 원본으로서 수리 한다:
  - i. 서류발행인에 의하여 수기, 타자, 천공 또는 스탬프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또는
  - ii. 서류발행인의 원본용지상에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또는
  - iii. 제시된 서류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한, 원본이라는 명기가 있는 경우
- d. 신용장이 서류의 사본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본 또는 사본의 제시는 허용된다.
- e. 신용장 “2통(in duplicate)”, “2부(in two fold)”, “2통(in two copies)”과 같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수통의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서류자체에 별도의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원본 1통과 사본으로 된 나머지 통수의 제시에 의하여 충족된다.

### ■ 제17조 해설

# 제18조 상업송장

제18조

## ■ 제18조 상업송장

제 18조 상업송장

a. 상업송장은:

- i. 수익자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보여야 하며(제38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 ii. 발행의뢰인 앞으로 작성되어야 하며(제38조 g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 iii. 신용장과 동일한 통화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리고
- iv. 서명될 필요가 없다

b.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또는 발행은행은 신용장에 의하여 허용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발행된 상업송장을 수리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결정은 모든 당사자를 구속한다. 다만 문제의 은행은 신용장에 의하여 허용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지급이행 또는 매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c. 상업송장상의 물품, 용역 또는 이행의 명세는 신용장에 보이는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 ■ 제18조해설

# 제 5 주

제19조-24조

유 하상

## 제19조 적어도 두 종류의 운송형태를 취하는 운송서류

제19조

### ■ 제19조 적어도 두 종류의 운송형태를 취하는 운송서류

제 19조 적어도 두 가지 다른 운송방식을 표시하는 운송서류

a. 적어도 두 가지의 다른 운송방식을 표시하는 운송서류(복합운송서류)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보여야 한다:

i.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다음의 자에 의하여 서명되어 있는 것:

-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대리하는 지정대리인, 또는
- 선장 또는 선장을 대리하는 지정대리인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에 의한 모든 서명은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대리인에 의한 모든 서명을 그 대리인이 운송인을 대리하여 서명하였는지, 또는 선장을 대리하여 서명하였는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ii. 다음에 의하여, 물품이 신용장에 명기된 장소에서 발송, 수탁 또는 본선선적되었음을 표시하고 있는 것:

- 사전인쇄된 문언, 또는
- 물품이 발송, 수탁 또는 본선선적된 일자를 표시하고 있는 스탬프 또는 표기

운송서류의 발행일은 발송, 수탁 또는 본선선적일, 및 선적일로 본다. 그러나, 운송서류가 스탬프 또는 표기에 의하여 발송, 수탁 또는 본선선적일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일자를 선적일로 본다.

## 제19조 적어도 두 종류의 운송형태를 취하는 운송서류

제19조

### ■ 제19조 적어도 두 종류의 운송형태를 취하는 운송서류

- iii. 비록 다음과 같더라도, 신용장에 명기된 발송, 수탁 또는 선적지 및 최종목적지를 표시하고 있는 것:
  - a. 운송서류가 추가적으로 다른 발송, 수탁 또는 선적지 또는 최종목적지를 명기하고 있더라도
  - 또는
  - b. 운송서류가 선박, 적재항 또는 양륙항에 관하여 “예정된”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의 표시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 iv. 단일의 운송서류 원본 또는, 2통 이상의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서류상에 표시된 대로 전통인 것.
- v. 운송의 제조건을 포함하고 있거나, 또는 운송의 제조건을 포함하는 다른 자료를 참조하고 있는 것(약식/배면백지식 운송서류). 운송의 제조건의 내용은 심사되지 아니한다.
- vi.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어떠한 표시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
- b. 이 조에서, 환적이란 신용장에 명기된 발송, 수탁 또는 선적지로부터 최종목적지까지의 운송과정 중에 한 운송수단으로부터의 양화 및 다른 운송수단으로의 재적재를 말한다.
- c. i. 운송서류는 물품이 환적될 것이라거나 또는 될 수 있다고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운송은 동일한 운송서류에 의하여 커버되어야 한다.
  - ii.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환적이 행해질 것이라거나 또는 행해질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는 운송서류는 수리될 수 있다

## 제19조 적어도 두 종류의 운송형태를 취하는 운송서류

제19조

### ■ 제19조 해설

#### 운송서류의 종류(제19조-25조)

\* 복합운송서류, 해상선하증권, 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 용선계약부선하증권, 항공운송서류, 도로/철도/내수로운송서류, 특사 배달 영수증

• 각 운송방식별로 운송서류 수리요건, 발행자의 명칭과 자격표시, 서명방법, 선적일, 환적여부, 제시할 원본 통수 등 수리요건을 명시함

#### 복합운송서류(제19조)

\* 개념 :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해 운송되는 경우 발행된 서류

- ① 운송인, 복합운송인, 선장, 각 대리인 명칭, 자격, 서명
- ② 상품이 수탁, 발송 또는 본선적재
- ③ 선적항과 수탁지가 다르고, 양륙항과 최종도착지가 다른 경우 및 선박, 선적항, 양륙항에 "예정된"이라는 표시서류
- ④ 발급된 원본전통
- ⑤ 약식, 배면 백지식 복합운송서류
- ⑥ 용선계약 표시는 수리 불가
- ⑦ L/C에서 환적을 금지 해도 전체 운송이 동일한 복합운송 서류에 커버 되면 환적 되거나, 환적 될 수 있다는 표시 서류 수리 가능

####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항이 선하증권 수탁지란에 기재된 경우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항이 선하증권 수탁지란에 기재된 경우 신용장에서 명시한 선적항에서 선적되었다는 본선적재부기와 적재 선박명이 기재되었다면 수리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됨

## 제20조 선하증권

### 제20조

#### ■ 제20조 선하증권

##### 제 20조 선하증권

a. 선하증권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보여야 한다.

i. 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다음의 자에 의하여 서명되어 있는 것:

-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대리하는 지정대리인, 또는
- 선장 또는 선장을 대리하는 지정대리인.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에 의한 모든 서명은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대리인에 의한 모든 서명은 그 대리인이 운송인을 대리하여 서명하였는지, 또는 선장을 대리하여 서명하였는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ii. 다음에 의하여 물품이 신용장에 명기된 적재항에서 지정선박에 본선선적되었음을 표시하고 있는 것:

- 사전인쇄된 문언, 또는
- 물품이 본선선적된 일자를 표시하고 있는 본선적재표기

선하증권의 발행일은 선적일로 본다. 다만, 선하증권이 선적일을 표시하고 있는 본선적재표기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본선적재표기상에 명기된 일자는 선적일로 본다.

선하증권이 선박의 명칭에 관하여 “예정된 선박”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의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선적일 및 실제 선박의 명칭을 표시하고 있는 본선적재표기는 요구된다.

### ■ 제20조 선하증권

- iii. 신용장에 명기된 적재항으로부터 양륙항까지의 선적을 표시하고 있는 것.  
선화증권이 적재항으로서 신용장에 명기된 적재항을 표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또는 재항에 관하여“예정된”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의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에 명기된 대로 적재항, 선적일 및 선박의 명칭을 표시하고 있는 본선 적재표기가 요구된다. 이 규정은 비록 지정된 선박에의 본선적재 또는 선적이 선화증권상에 사전에 인쇄된 문언에 의하여 표시되어 있더라도 적용된다.
- iv. 단일의 선화증권 원본 또는, 2통 이상의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선화증권 상에 표시된대로 전통인 것.
- v. 운송의 제조건을 포함하고 있거나, 또는 운송의 제조건을 포함하는 다른 자료를 참조하고 있는 것(약식/배면백지식 선화증권). 운송의 제조건의 내용은 심사되지 아니한다.
- vi.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어떠한 표시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
- b. 이 조에서, 환적이란 신용장에 명기된 적재항으로부터 양륙항까지의 운송과정 중에 한 선박으로부터의 양화 및 다른 선박으로의 재적재를 말한다.
- c. i. 선화증권은 물품이 환적될 것이라거나 또는 될 수 있다고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전운송이 동일한 선화증권에 의하여 커버되어야 한다.
  - ii.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물품이 선화증권에 의하여 입증된 대로 컨테이너, 트레일러 또는 래쉬선에 선적된 경우에는, 환적이 행해질 것이라거나 또는 행해질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는 선화증권은 수리될 수 있다.
- d. 운송인이 환적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명기하고 있는 선화증권상의 조항은 무시된다.

## ■ 제20조 해설

**용선계약선하증권상의 도착항 변경**

신용장상에서 도착항을 특정 지리적 지역, 몇 개의 항구로 정한 경우에, 도착항을 특정 항구로 기재하지 않고, 특정 지리적 지역이나 몇 개의 항구로 기재하는 것도 허용하도록 변경되었다.

**해상운송서류(제20조)**

•운송인 명義와 함께 운송인, 선장 또는 각각의 대리인이 서명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인증하여야 함. (운송서류 발행인의 Name, Capacity, Signature 표시되어야 함)

본선적재 또는 선적 되었음이 명시되어야 함

## 제20조 선하증권

### 제20조

#### ■ 제20조 해설

##### \* 본선적재 부기

- 신용장에서 선적항을 명시하고 선하증권상 선적항이 명시되지 않거나 "예정된" 선적항을 명시한 경우 본선적재 부기에서 L/C상의 선적항을 명시할 것 .
- 발행된 원본 전통 제시할 것
- 약식 또는 배면 백지식 선하증권 수리 가능
- 용선계약에 의한 운송이라는 표시가 없어야 함
- 전체해상 구간이 하나의 동일한 선하증권으로 커버 되는 경우 환적 될 것이라는 표시가 있어도 수리 가능
- L/C 에서 환적을 금지한 경우에도 컨테이너 , 트레일러 및 LASH에 선적된 것이면 환적 될 것이라는 표시가 있어도 수리 가능
- 선하증권 상에 운송인이 환적 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고 하는 문구는 은행에서 무시함
- 환적의 정의 :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항에서 양륙항 사이에 해상운송도중 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화물을 풀어 다시 다른 선박으로 적재하는 것
- 환적 금지 문언이 없는 경우 : 환적 불가로 간주함

##### \* 선하증권의 법정기재 사항(상법 제 814 조)

상품명세, 화물의 기호, 선박명, 국적, 톤수, 선장명, 하송인명, 하수인명, 선적항, 양륙항, 운임, 작성지, 작성 일자, 발행 통수